

계약 이행 준수사항 지침

2026 웹툰 IP 유통 사업화 지원 팝업 굿즈 디자인·제작 용역

참조번호 2026-IP-001 | 2026년 8월 11일

본 지침은 「2026 웹툰 IP 유통 사업화 지원 팝업 굿즈 디자인·제작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기관과 수행업체가 상호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 것입니다. 입찰 참가업체는 본 지침의 내용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 및 적용 범위

- 본 지침은 발주기관과 수행업체가 계약 수행 전 과정에서 상호 준수하여야 할 기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본 지침은 입찰공고일부터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까지 적용한다.
- 본 지침은 입찰공고서 및 과업지시서와 함께 계약 문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 본 지침과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과업지시서를 우선한다.

제2조 상호 존중의 원칙

- 발주기관과 수행업체는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서 상호 존중하며 성실히 협력한다.
- 어느 일방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양 당사자의 임직원은 상호 간에 인격을 존중하며, 폭언·모욕·차별적 언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업무상 의견이 대립하는 경우 감정적 대응을 지양하고 계약 문서와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협의한다.

제3조 발주기관의 이행사항

1. 자료 제공

- 발주기관은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웹툰 원본 이미지 및 디자인 소스(PSD, AI 등), CI·로고, 디자인 방향 및 제작 가이드를 제공한다.
-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대상 웹툰 IP에 대하여 원저작권자로부터 상품화에 필요한 권리를 적법하게 확보하여 관리하며, 이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 검토 및 회신

- 발주기관은 수행업체가 제출한 시안·샘플에 대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검토 의견을 회신한다.
- 검토 의견은 서면(전자)으로 명확하게 전달하며, 구두 지시만으로 과업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검토 회신이 지연된 기간은 수행업체의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3. 과업 범위의 존중

- 발주기관은 계약 문서에 정하지 아니한 추가 과업을 무상으로 요구하지 아니한다.
- 과업 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계약금액 및 기한을 조정한다.
- 승인된 디자인의 변경 요청이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반복되어 수행업체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양 당사자는 그 처리 방안을 협의한다.

4. 검수 및 대금지급

- 발주기관은 정해진 검수기간 내에 검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다.
- 검수 결과 불합격 판정 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보한다.
- 발주기관은 최종 검수 완료 후 정해진 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제4조 수행업체의 이행사항

1. 일정 및 품질

- 수행업체는 계약 문서에 정한 일정과 품질 기준을 준수한다.
- 납품 지연이 예상되는 경우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대응 방안을 협의한다.
- 수행업체는 3차 납품 전 자체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불합격품 발생을 최소화한다.

2. 원본 자료의 취급

- 수행업체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원본 이미지를 임의로 변형·색상 조정·AI 재생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 캐릭터의 얼굴, 손, 주요 소품 등이 부자연스럽게 잘리지 않도록 배치한다.
- 저해상도 이미지를無理하게 확대하여 사용하지 아니한다.

3. 보고 및 소통

- 수행업체는 주요 공정의 진행 상황을 발주기관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 과업 수행 중 발생한 문제는 은폐하지 아니하고 즉시 공유한다.

4. 하도급 및 외주

- 주요 과업(디자인)의 재하도급은 금지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는다.
- 제조·인쇄·후가공(박, 형압, 도무송, 제본, 전사 등) 공정의 외주는 제한 대상이 아니다.
- 수행업체는 제조·후가공 외주처 목록을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에 통지한다.
- 수행업체는 외주처에 대하여도 본 지침에 준하는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다.

제5조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 발주기관이 제공한 웹툰 원본 이미지, CI, 로고 등은 발주기관이 저작권자로부터 상품화에 필요한 권리를 적법하게 확보하여 관리하는 자산이다.
- 수행업체는 제공받은 자산을 본 계약 목적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취득하지 아니한다.
- 수행업체가 제작한 디자인 결과물(2차적저작물 포함)에 대한 저작권은 검수완료 및 대금지급과 동시에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 수행업체 및 그 소속 디자이너는 본 과업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 수행업체는 계약목적 외의 용도로 결과물을 사용·복제·배포할 수 없다.
- 수행업체가 결과물을 자사 포트폴리오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제3자 권리 침해 방지

- 수행업체는 과업 수행 시 제3자의 저작권, 상표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행업체가 사용한 서체·이미지·소재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수행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 수행업체는 사용한 서체의 상업적 사용 라이선스 보유 사실을 발주기관에 소명하여야 한다.

제7조 보안 및 비밀유지

- 양 당사자는 과업 수행 중 취득한 상대방의 영업비밀 및 사업 관련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행업체는 미공개 웹툰 IP, 디자인 소스, 팝업스토어 기획 정보를 계약 종료 후에도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 수행업체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본 과업의 수행 사실 및 결과물을 대외에 공표하지 아니한다.
- 본 조의 의무는 계약 종료 후에도 지속된다.
-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반 당사자가 이를 배상한다.

제8조 원본 소스의 반환 및 폐기

- 수행업체는 과업 완료 또는 계약 종료 시 제공받은 웹툰 원본 이미지, 디자인 소스, CI·로고 및 그 사본 일체를 반환하거나 폐기한다.
- 폐기한 경우 수행업체는 폐기 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한다.
- 외주처에 제공한 자료에 대해서도 동일한 반환·폐기 의무를 이행하도록 한다.
- 본 조의 의무는 계약 종료 후에도 존속한다.

제9조 공정거래 및 청렴

- 입찰 참가업체는 담합, 허위서류 제출, 대리입찰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양 당사자의 임직원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 향응, 편의 등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제공·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계약과 관련하여 알선·청탁을 하거나 이를 매개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본 조 위반이 확인된 경우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의 사유가 된다.

제10조 의사소통 원칙

- 양 당사자는 계약 체결 후 각각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 과업 내용의 변경, 일정 조정, 승인 등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구두로 협의한 사항은 협의 후 지체 없이 서면으로 확인한다.
- 입찰 단계의 문의에 대한 회신 중 입찰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나라장터에 공지하여 전체 입찰 참가업체에 동일하게 안내한다.

제11조 안전 및 법령 준수

- 양 당사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된 관계 법령을 준수한다.
- 수행업체는 제작·납품 과정에서 산업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납품 장소에서의 상하차 작업 시 안전조치를 이행한다.
- 수행업체는 제작물이 관련 법정 표시사항 및 안전 기준에 부합하도록 한다.

제12조 분쟁의 처리

-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상호 협의를 통한 해결을 우선한다.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발주기관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한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직접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계약 문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취지를 준용한다.

제13조 위반 시 조치

위반 사항	조치
담합·허위서류 제출·대리입찰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계약체결 거부, 손해배상 청구
승인 없는 디자인 재하도급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귀속
비밀유지 의무 위반	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원본 이미지 무단 변형·유용	시정 요구, 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제3자 권리 침해	수행업체 전적 책임, 손해배상

위반 사항	조치
납품 지연	지체상금 부과(지연 1일당 계약금액의 0.075%), 계약 일부 해지 및 제3자 발주 시 추가비용 청구
금품·향응 수수	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 지체상금 총액이 계약금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 기타

- 본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 및 관계 법령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디씨씨이엔티(주) IP사업부 | 2026년 8월 11일